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9(금) 10:00

제244회 금천구의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37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2. 제안이유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과 직업 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한 주민이 전출 지역과 상관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그 밖에 별표상의 세부 규정을 관계법령 및 사업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안 제6조제2항제4호)
- 나. 전입 주민 중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지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전국으로 확대(안 제7조제6항)
- 다. 수집·운반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50리터에서 30리터로 변경 (안 별표 2의 2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 가격)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3. 4. 26. ~ 5. 16.(20일 이상)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종량제봉투의 배출 등을 사업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1)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안 제6조제2항제4호)
 -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보조사업이 2023년 첫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함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 규 모 : 직영(103명), 대행(125명)
- 지원내용 : 명절 격려비, 휴양소 지원 등
- 보 조 금 : 51,260천원

- 2)전입 주민 중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지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전국으로 확대(안 제7조제6항)
- 3)수집·운반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50리터에서 30리터로 변경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전입주민이 종량제 봉투의 배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업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